

#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	----

제출년월일 : 2003. 07.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조례 가운데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표현의 수정 등이 필요한 조항 및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성이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기존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  
나.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의 근거마련(조례 제17조제3호 신설 및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20조제2항)
- 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통보 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함(조례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마. 감량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군수의 지도, 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 마련(조례 제24조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계부처승인 : 강원도 환경67500-2559(2002.11.21)호의 조례준칙개정 시달  
라.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03-138호(2003.5.10)  
마. 신.구 조문 대비 표 : “별첨”

##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내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 축산물류 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7.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 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9.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 별도로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0.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제1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공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으로 하여야 한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지방불가대책위원회심의 결정금액 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 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 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자의 시설이 다른 시, 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 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 영. 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 제4장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제23조 내지 제38조를 각각 제26조 내지 제41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항 목	부 과 금 액 (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용 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5	10	20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서(변경신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6.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 대책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사업장명 :

(단위 : kg)

연월일	발생량	자 가 감 량			재 활 용			
		자가감 량화법	자 가 처리량	처리량 누 계	재활용량	재활용 방 법	재활용자	누 계

**(작성요령)**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 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자가감량 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감량방법은 탈수, 건조, 발효, 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 등으로 기재하고 재활용자는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소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2조(정의)</p> <p>5. <u>음식물쓰레기</u>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수, 축산물류 <u>폐기물</u>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p> <p>6.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규칙 별표4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p> <p>7. <u>음식물쓰레기</u>감량화라 함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u>감량</u>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u>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u>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u>처리</u>하는 것을 말한다.</p> <p>8. <u>음식물쓰레기</u>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u>재생처리 또는 재이용</u>하는 것을 말한다</p> <p>9. <u>음식물쓰레기</u>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u>쓰레기봉투</u>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u>음식물쓰레기</u>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p>	<p>제2조(정의)</p> <p>5. "<u>음식물류 폐기물</u>"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 수, 축산물류 <u>쓰레기</u>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p> <p>6. "<u>음식물류 폐기물</u>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u>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u> 시행규칙 별표4 제3호의 <u>라목</u>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p> <p>7. "<u>음식물류 폐기물</u>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u>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u>하는 것을 말한다.</p> <p>8. "<u>음식물류 폐기물</u>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u>가축의 먹이</u>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및 기타 용도로 <u>재활용</u>하는 것을 말한다.</p> <p>9. "<u>음식물류 폐기물</u>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u>규격봉투</u>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u>음식물류 폐기물</u>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p>

현행	개정
<p>10. <u>음식물쓰레기</u>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u>음식물쓰레기</u>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의 <u>재활용재품을 생산</u>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3장 <u>음식물쓰레기</u>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p> <p>(신설)</p> <p>제13조(<u>음식물쓰레기</u>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u>음식물쓰레기</u>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u>음식물쓰레기</u>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u>쓰레기수수료</u> 중량제 지침에 따른 <u>재활용가능폐기물</u>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한다.</p> <p>②군수는 <u>음식물쓰레기</u>를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4조(<u>생활폐기물배출자</u>의 <u>음식물쓰레기</u>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u>생활폐기물배출자</u>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u>음식물쓰레기</u>를 배출하여야 한다.</p>	<p>10. "<u>음식물류 폐기물</u>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u>음식물류 폐기물</u>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u>재활용</u>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p> <p>제3장 <u>음식물류 폐기물</u>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p> <p>제13조(적용범위) 이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생활폐기물</u>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안의 <u>생활폐기물배출자</u>에 대하여 적용한다.</p> <p>제14조(<u>음식물류 폐기물</u>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군수는 <u>음식물류 폐기물</u>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u>음식물쓰레기</u>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u>쓰레기수수료</u> 중량제 지침에 따른 <u>재활용가능 폐기물</u>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u>음식물류 폐기물</u>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p> <p>제15조(<u>생활폐기물배출자</u>의 <u>음식물류 폐기물</u>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u>생활폐기물배출자</u>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u>음식물류 폐기물</u>을 배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1. <u>음식물쓰레기</u>는 배출하기 전에 <u>감량화 또는 자원화</u>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u>음식물쓰레기</u> 분리배출지역에서는 <u>음식물쓰레기</u>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5조(<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사업자의 <u>음식물쓰레기</u> 처리방법 등)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u>영</u>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u>음식물쓰레기</u>를 재활용 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음식물류 폐기물</u>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u>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u> 등 <u>음식물쓰레기</u>를 <u>재생처리 또는 재이용</u>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p>	<p>1. <u>음식물류 폐기물</u>은 배출하기 전에 <u>자원화 또는 적정처리</u>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 <u>음식물류 폐기물</u> 분리배출지역에서는 <u>음식물류 폐기물</u>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u>음식물류 폐기물</u> 감량의무사업장의 <u>음식물류 폐기물</u> 처리 방법 등) <u>음식물류 폐기물</u>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u>같은법 시행령</u>(이하 “<u>영</u>”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u>음식물류 폐기물</u>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u>음식물류 폐기물</u>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u>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u>(이하 “<u>규칙</u>”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u>음식물류 폐기물</u>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현행	개정
<p>2.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u>음식물쓰레기</u>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u>처리</u>하여야 한다.</p> <p>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p>	<p>2.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u>음식물류 폐기물</u>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p> <p>3.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p> <p>4.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u>제1호의 규정에 따라</u>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한다.</p>
<p>제16조(음식물<u>쓰레기</u>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u>쓰레기</u>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p> <p>1.별지 제1호서식의 <u>음식물쓰레기</u>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7조(음식물<u>류 폐기물</u>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u>류 폐기물</u>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p> <p>1.별지 제1호서식의 <u>음식물류 폐기물</u>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2.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 재 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2.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 . 재 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u>군수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p> <p>3.<u>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u>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u></p> <p><u>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u></p> <p><u>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u></p>
<p>제17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 배포하는 등 <u>음식물쓰레기가</u>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 . 배포하는 등 <u>음식물류 폐기물이</u> 적정 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②군수는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p> <p>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군수는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④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18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①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쓰레기를 담은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고 봉투의 종류 및 재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중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19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p> <p>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p> <p>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
<p>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u>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 대체등의 조치를 <u>명하여</u> <u>야하며</u>,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p> <p>제20조(음식물쓰레기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음식물쓰레기</u>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가 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p> <p>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u>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u> 부과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③군수는 <u>동조</u>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음식물류 폐기물</u>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 대체 등의 조치를 <u>명할 수 있으며</u>,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u>제1호</u>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p> <p>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 운반 . 처리 수수료의 부과 . 징수) ①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u>음식물류 폐기물</u>의 수집 . 운반 .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 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u>평창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심의 결정금액 또는 월간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u></p> <p>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u>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p>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 . 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u>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1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u>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중 <u>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u>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u>사료화, 퇴비화 전문 중간 처리업 허가</u>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u>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u></p> <p>③음식물쓰레기 <u>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사료, 퇴비로 재생 이용하는 농, 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재활용 이용</u></p>	<p>④<u>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u></p> <p>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u>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u></p> <p>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u>폐기물재활용신고자</u>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제1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u>재활용창구 이용</u>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u>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u></p> <p>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u>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 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
<p>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p> <p>(신설)</p> <p>제22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u>음식물쓰레기</u>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u>감량화</u>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u>음식물쓰레기</u>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u>감량의 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u>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④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u>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u>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u>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u>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u> 통보하여야 한다.</p> <p>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u>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을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u> 그 내용을 <u>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u>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2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u>음식물류 폐기물</u>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u>음식물류 폐기물</u>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u>감량의 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u>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다.</p> <p>(신설)</p> <p>(신설)</p> <p>제4장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p> <p>제2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개정내용 없음)</p> <p>제24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개정내용 없음)</p> <p>제25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개정내용 없음)</p> <p>제26조(판매소의 지정) (개정내용 없음)</p> <p>제27조(판매자의 준수사항) (개정내용 없음)</p>	<p>다</p> <p>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p> <p>제4장 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p> <p>제26조(쓰레기봉투의 종류, 재질 등) (현행과 같음)</p> <p>제2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현행과 같음)</p> <p>제28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현행과 같음)</p> <p>제29조(판매소의 지정) (현행과 같음)</p> <p>제30조(판매자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p>
--	--

현행	개정
제28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 징수) (개정내용 없음)	제3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 징수) (현행과 같음)
제2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개정내용 없음)	제3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현행과 같음)
제30조(수수료의 감면) (개정내용 없음)	제33조(수수료의 감면)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개정내용 없음)	제34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현행과 같음)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개정내용 없음)	제35조(과태료의 처분통지 등)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부과기준) (개정내용 없음)	제36조(과태료부과기준) (현행과 같음)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개정내용 없음)	제37조(이의제기 및 법원의 통보) (현행과 같음)
제35조(강제징수) (개정내용 없음)	제38조(강제징수) (현행과 같음)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개정내용 없음)	제39조(과태료의 귀속) (현행과 같음)
제37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개정내용 없음)	제40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관리)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38조(준용규정) (개정내용 없음)		제41조(준용규정) (현행과 같음)																																																																							
(별표4)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3조제3항, 조례제37조관련)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된다.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u>당해</u>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부과대상</th> <th colspan="3">부과금액(만원)</th> </tr> <tr> <th>1차위반</th> <th>2차위반</th> <th>3차위반</th> </tr> </thead> <tbody> <tr> <td>4.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16조 위반)</td> <td>5</td> <td>10</td> <td>20</td> </tr> <tr> <td>5.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 또는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17조 위반)</td> <td>20</td> <td>50</td> <td>100</td> </tr> <tr> <td>6.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제15조관련)</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td> <td>5</td> <td>10</td> <td>20</td> </tr> <tr> <td>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td> <td>5</td> <td>10</td> <td>20</td> </tr> <tr> <td>7.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장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제12조 관련)</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td> <td>20</td> <td>50</td> <td>100</td> </tr> </tbody> </table>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16조 위반)	5	10	20	5.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 또는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17조 위반)	20	50	100	6.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제15조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5	10	20	7.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장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부과항목</th> <th colspan="3">부과금액(만원)</th> </tr> <tr> <th>1차위반</th> <th>2차위반</th> <th>3차위반</th> </tr> </thead> <tbody> <tr> <td>삭제</td> <td></td> <td></td> <td></td> </tr> <tr> <td>삭제</td> <td></td> <td></td> <td></td> </tr> <tr> <td>4.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td> <td>5</td> <td>10</td> <td>20</td> </tr> <tr> <td>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td> <td>5</td> <td>10</td> <td>20</td> </tr> <tr> <td>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제12조관련)</td> <td></td> <td></td> <td></td> </tr> <tr> <td>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td> <td>20</td> <td>50</td> <td>100</td> </tr> </tbody> </table>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삭제				삭제				4.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제12조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절하게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16조 위반)	5	10	20																																																																						
5.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 또는 배출하는 경우(조례 제17조 위반)	20	50	100																																																																						
6.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제15조관련)																																																																									
가. 음식물쓰레기를 자치단체의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5	10	20																																																																						
7.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장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제12조 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삭제																																																																									
삭제																																																																									
4.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 관련)																																																																									
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치단체의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5	10	20																																																																						
나.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하는 경우	5	10	20																																																																						
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법제12조관련)																																																																									
가.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20	50	100																																																																						

현행				개정			
부과대상	부과금액(만원)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나.음식물쓰레기 감량의 무계획신고서, 연간음 식물쓰레기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음식 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 보존하지 아니 한 경우	10	20	30	나.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이행계획신고서(변경신 고서 포함), 연간 음식물 류 폐기물발생 및 처리실 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 니하거나, 음식물류 폐기 물 관리대장을 기록, 보 존하지 아니한 경우	10	20	30
8. 음식물쓰레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 선대책 기타 필요한 조 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6.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 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 선 대책 기타 필요한 조 치명령을 위반한 자(법 제12조 관련)	100	300	500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6조의2(생활폐기물의처리대행자)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  
(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폐기물(이하“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  
(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 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규칙 제6조의3(폐기물처리시설외의장소에서폐기물처리) 영 제6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 폐기물 및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 4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별표 4 제3호

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 운영하는 자